

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

「국토기본법」 제2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목적

-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국토모니터링의 효율적인 추진·지원을 위해 「국토기본법」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

2. 위탁기관

- 기관명 : 한국국토정보공사(LX)
- 대표자 : 어 명 소
- 주 소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(중동)

3. 위탁업무

- 「국토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(국토모니터링 실시 지원 및 플랫폼 구축·운영, 기술지원 등)

4. 위탁기간

- 지정 고시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